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7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의3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연도의 다음 연도”를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은 해 9월 30일까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63조제3항제4호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인증의”를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	-----	-----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0.3
--	-----	-----

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가) 1)에서 1명 이상 나) 2)에서 2명 이상 다) 2)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3 제2호나목 전국의 자격란의 1) 중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부터 어목까지 및 저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저목까지 및 커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도목”을 “모목”으로 한다.

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	500	500	500
처.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100	10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전기건설기계 중 굴착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작된 굴착기로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건설기계의 범위에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